

축산농가 부담만 주는 기반시설 부담금 철회돼야

양돈협, 축사시설에 부담금 법 취지와 맞지 않음 지적
건설교통부에 질의 등 단계별 대응책 마련

정부가 신축하는 축사시설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개방시대의 축산업과 관련농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남 거창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농가 A씨는 양돈장 120평을 신축하려고 담당 거창군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지난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약 500만원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축사시설과 관련해 도로는 대부분 양돈장에서 부담해서 설치했으며, 상수도는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하수도는 정화조 등을 묻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축사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는 건축 법에 적용되는 축사시설도 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사시설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농촌현실 전혀 반영 못한 탁상입법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에서 적정한 농어업시설 확보를 위해 부과기준을

연면적 200제곱미터(약60평)이상으로 정하고 건축허가 시부터 2개월 이내 부과하고,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보통 1백평 규모의 축사의 경우 사육두수가 30마리(양돈)에 불과하고, 소규모 농민들만 해도 평균 1백20평 규모로 축사를 건축하고 있어 농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기반시설부담금 제정은 개발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개발 행위자에게 부담(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토록 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특히 정부 부동산대책의 연장선(재건축아파트 안정대책)에서 추진된 사항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일반적인 건축행위에 따른 도로·공원·녹지·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의 경우 교통유발 및 인구집중 등 기반시설을 요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 축산시설, 기반시설 부담금 제외돼야

이에 따라 농림부는 주무부처인 건교부를 상대로 축사 등 농업관련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양돈협회 차원에서도 도로, 공원 등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건축업자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가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로 축사시설이 건축물에 해당된다하여 축사시설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당초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농림부와 건설교통부에 기반시설부담금 대상에서 축사시설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반시설부담금, 축산시설 제외 요청 양돈협회 등 축산단체 공동건의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이 축산시설에도 적용되고 있어 농가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를 비롯한 축산업계와 축산농가들은 “축산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할 것”을 강력 요청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축사 등 농·축산용 건축물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대부분 60평 이상의 대규모로 농·축산용 건축물을 준비하는 농가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등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축산농가에게는 가뜩이나 축산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업친 데 덮친 격이다.

양돈협회는 지난 8월 3일 건설교통부로 “축산시설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인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단순 개발행위와는 차별되며, 대부분의 축산시설은 동법에 정의하는 기반시설인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녹지 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며 “가축 사육시설에 부담금 부과를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과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축산, 농민단체들도 또한 축산시설에 부담금 부과가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시행령 중 축산시설 부분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농림부와 건설교통부로 제출하고, 축사 및 가축시설, 분뇨처리시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축산 정책을 통한 안전축산을 생산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이므로 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의문을 통해 축산농가들은 한·미 FTA 등 수입개방으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축산시설도 단순 개발 건축물로 간주해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축산현장의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조속히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